

[별표 1] 교육업적 평가기준<개정 2010.2.19.,2010.9.30.,2011.4.1.,2011.6.28.,2011.11.11., 2012.7.20.,2014.1.22.,2015.2.26.,2016.3.2.,2018.1.18.>

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점수 한도
필수 항목	책임시수	15점 - ((책임시수 - 담당 강의시수) × 0.5))	15	100
	수업계획서 입력	6점 - (미입력 강좌 수 × 2)	6	
	강의평가	강의평가점수(100점) × 0.5	50	
	강의결과보고서 입력	3점 - (미입력 강좌 수 × 1)	3	
	학생 상담·지도	학생 상담·지도 비율에 따라 평가	20	
	스마트교육 역량강화	스마트교육 수업운영 및 스마트교육 참여 활동에 따라 평가	6	
가점 평가 항목	교양강의 담당	교양강의 담당 : 2점	2	5
	외국어강의 담당	외국어강의 담당 : 1점	1	
	MOOC 운영	교내·외 MOOC 운영 : 2점	2	
	인증프로그램 참여	인증프로그램 참여 : 1점	1	
	책임시수 초과강의	(담당 강의시수 - 책임시수) × 0.5	3	
	강의소개동영상 운영	강의소개동영상 운영 : 1점	1	
감점 평가 항목	휴·결강에 대한 미 보강	미 보강일수 1일 이하 : -1점, 1일 초과 : -2점	-2	-4
	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 교육 미 참여	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 교육 미 참여 : -1점	-1	
	연구실안전 교육(자연·공학계열) 미 참여	연구실안전 교육(자연·공학계열) 미 참여 : -1점	-1	
합계				100

비고

1. 연구년, 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.
2. 학부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. 다만, 책임시수 5 미만인 교원이 대학원 수업을 담당하여 학부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하되, 직전 학기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.
3.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해당 항목의 배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,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4. 학부 강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, 세부기준은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.
5. 법학전문대학원 강좌, 학생상담·지도는 학부 강좌, 학생상담·지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.
6. 학부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특수대학원 소속교원의 평가점수는 전체교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.

[별표 1의2]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기준<신설 2010.2.19, 개정 2010.9.30.,2011.4.1., 2011.6.28.,2014.1.22.,2017.5.2.,2018.1.18.>

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점수 한도
필수 항목	담당 강의시수	18점(기본점수) + (담당 강의시수)	20	100
	수업계획서 입력	5점 - (미입력 강좌 수 × 2)	5	
	강의지원시스템 활용	담당 강좌의 2분의 1이상 강좌에서 활용	2	
	강의평가	강의평가점수(100점) × 0.5	50	
	강의결과보고서 입력	3점 - (미입력 강좌 수 × 1)	3	
	학생 상담·지도	10점 - 상담·지도 내역 미입력 비율	10	
	스마트교육 역량강화	스마트교육 수업운영 및 스마트교육 참여 활동에 따라 평가	10	
가점 평가 항목	PBL	PBL 튜터 또는 모듈 개발	3	10
	OSCE/CPX	OSCE/CPX 평가 또는 모듈 개발	3	
	분반강의	1시수 이상 분반 강의	3	
	시기성과	시기성과평가 참여	3	
	외국어강의	1시수 이상 외국어 강의	3	
	MOOC 운영	교내·외 MOOC 운영	2	
	기초·임상 종합평가	기초·임상 종합평가 관련 업무	2	
	통합교과목	통합교과목 책임·간사 교수	2	
	학년담임교수	학년담임교수	2	
	전체교수회의, 교수연수회 참석	전체교수회의, 교수연수회 참석	2	
	학생연구지도	학부생 연구지도	2	
	대학원생 지도	석·박사 지도교수	2	
감점 평가 항목	휴·결강에 대한 미 보강 (승인없이 무단 변경)	미 보강일수 1일이하 : -1점, 1일초과 : -2점	-2	-4
	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미 참여	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미 참여 : -1점	-1	
	연구실안전 교육(의학계열) 미 참여	연구실안전 교육(의학계열) 미 참여 : -1점	-1	
합계				100

비고

1. 연구년, 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.
2. 신규 임용된 교원이 해당 학기의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과대학 교원의 교육업적 평가점수 평균점을 부여한다.
3.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4. 학부 강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, 세부기준은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.
5. <삭제>
6. 가점평가 항목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.
7. 교원의 특성화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육업적 평가 시 의과대학 교원의 개별 교육업적 평가 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.

$$\text{교육업적 평가점수} \times \frac{\text{의과대학을 제외한 전체 교원 교육업적 평균점}}{\text{의과대학 교원 전체 교육업적 평균점}}$$